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질병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시행)되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수산물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물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37조의11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의13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의14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의17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3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수산물전염병) 「수산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수산물전염병)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u>해양수산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질병	4.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제8조(정보공개)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정보공개)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u> 이 긴급한 조치를 지시한 수산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물질병이 발생한 국가·지역·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2.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3. 그 밖에 <u>해양수산부장관</u> 이 수산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37조의13(휴업·폐업의 신고서)

①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
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
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
4호의12서식의 신고서에 신고
필증(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개설 장소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
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7조의14(공수산물질병관리사) ①
해양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
 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
 수산물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3(휴업·폐업의 신고서)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4(공수산물품질관리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17(연수교육) ①·② (생략)

③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

_____.

②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보고해야---.

제37조의17(연수교육)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에게 제출해 -----

-----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

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 -----

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u>실시하여야</u> 한다.	③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 <u>실시해야</u> -----.
④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u>해양수산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① ~ ③ (생 략)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해양수산부장관</u> 이 정한다.	④ ----- -----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